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인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24. ~ 1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고할 때, 1억원(曆年)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1억원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억원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과세표준 합계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2. (생략)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2